

변경 대비표

□ 대상펀드명 : 트러스톤 ESG 제갈공명 증권투자신탁[주식]

- 변경 사항: ① 제12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
 ②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
 ③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

□ 효력발생일: 2023. 6. 2.

□ 변경 내용

항 목	정정사유	정 정 전	정 정 후
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			
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	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	9.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(소규모펀드)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될 수 있으니,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, 판매회사,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	9.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(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,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년)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(소규모펀드)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될 수 있으니,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, 판매회사,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요약정보

투자비용	동종유형 총보수 최근기준으로 기재 제 12 기 재무제표 갱신에 따른 변경	2022. 3. 31. 기준 -	2023. 4. 28. 기준 2023. 5. 1. 기준
투자실적 추이(연평균 수익률)	제 12 기 재무제표 갱신에 따른 변경	-	2023. 5. 1. 기준



트러스톤자산운용

운용전문인력	최근 기준으로 기재	2022. 4. 30. 기준	2023. 4. 30. 기준
투자자 유의사항	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	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 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 액이 50 억원 미만(소규모 펀드)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 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, 투자 시 소규모 펀드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 부는 금융투자협회, 판매회 사,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 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	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 년(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, <u>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 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 년</u>)이 경과하였음에 도 설정액이 50 억원 미만 (소규모펀드)인 경우 분산 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 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 해지 될 수 있으니,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 하 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 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, 판 매회사, 자산운용사 홈페이 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매입 방법	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15 시 30 분 이전(경과후) : <u>제 2(3)영업일</u> 기준가격으 로 매입	15 시 30 분 이전(경과후) : <u>2(3)영업일</u> 기준가격으로 매입
환매 방법	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15 시 30 분 이전(경과후) : <u>제 2(3)영업일</u> 기준가격으 로 <u>제 4 영업일</u> 에 지급	15 시 30 분 이전(경과후) : <u>2(3)영업일</u> 기준가격으로 <u>4 영업일</u> 에 지급
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

5. 운용전문인력 가. 운용전문인력	최근 기준으로 기재	<u>2022. 4. 30. 기준</u>	<u>2023. 4. 30. 기준</u>
5. 운용전문인력 나. 운용중인 집합투자기 구에 관한 사항	최근 기준으로 기재	<u>2022. 4. 30. 기준</u>	<u>2023. 4. 30. 기준</u>
5. 운용전문인력 다.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	최근 3 년 경과 내역 삭 제	[책임운용역] <u>안홍익(2015.05.27</u> <u>~2018.10.10)</u> [부책임운용역] <u>조상현(2015.05.27</u> <u>~2018.10.10)</u> <u>이수정(2016.01.20</u> <u>~2017.12.26)</u>	<u>〈삭 제〉</u> <u>〈삭 제〉</u> <u>〈삭 제〉</u>



		이태하(2017.12.27 ~2018.10.10)	〈삭 제〉
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대상 가. 투자 대상	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가) (생 략) 나)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 로 불가피하게 위의 5)~10)의 투자한도를 초과 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 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처 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 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 기까지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봄 ① ~ ⑤ (생 략)	〈삭 제〉 가) (현행과 같음) 나)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 로 불가피하게 위의 5)~10)의 투자한도를 초과 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 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처 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 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 기까지)로 하며, 금융투자업 규정 제 4-54 조의 2 규정에 대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 자재산의 경우는 6 개월까지 (법 시행령 제 81 조제 3 항 제 3 호의 경우 이를 따른 다)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 한 것으로 봄 ① ~ ⑤ (현행과 같음)
	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	〈신 설〉	증권거래대차 목적 등 기재
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대상 나. 투자제한	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 화회사 다음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 함 가)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 로 불가피하게 위의 2),3),4),5)의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	〈삭 제〉 〈삭 제〉 다음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 함 가)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 로 불가피하게 위의 2),3),4),5)의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

		부터 3 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봄 ① ~ ⑤ (생략) 나) (생략)	부터 3 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)로 하며, <u>금융투자업규정 제4-54조의2 규정에 대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자산의 경우는 6 개월까지(법 시행령 제 81 조제 3 항제 3 호의 경우 이를 따른다))</u>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봄 ① ~ ⑤ (현행과 같음) 나) (현행과 같음)
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나. 특수위험	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	<신 설>	<u>증권대여위험 및 증권차입 위험 기재</u>
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다. 기타 투자위험	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	집합투자기구 해지의 위험 :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,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, 투자신탁(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)을 설정한 후 1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(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)을 설정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등의 사유로 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	집합투자기구 해지의 위험 :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,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, 투자신탁(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)을 설정한 후 1 년(<u>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,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 년</u>)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(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)을 설정하고 1 년(<u>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,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인</u>

		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.	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 년) 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등의 사유로 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.
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	최근 3 년 수익률 변동성 변동에 따른 변경	<u>표준편차 : 22.46%</u>	<u>표준편차 : 18.20%</u>
11. 매입, 환매,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. 매입	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3)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15 시 30 분 이전(경과 후) 자금을 납입한 경우 : 제 2(3)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	3)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15 시 30 분 이전(경과 후) 자금을 납입한 경우 : 제 2(3)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
11. 매입, 환매,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나. 환매	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2)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및 환매대금 지급시기 15 시 30 분 이전 환매를 청구한 경우 :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 2(3)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 4(4)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	2)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및 환매대금 지급시기 15 시 30 분 이전 환매를 청구한 경우 :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2(3)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4(4)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
12.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.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	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<u>대차대조표</u>	<u>재무상태표</u>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	동종유형 총보수 최근기준으로 기재 제 12 기 재무제표 갱신에 따른 변경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	<u>2022. 3. 31. 기준</u> - 〈신 설〉	<u>2023. 4. 28. 기준</u> <u>2023. 5. 1. 기준</u>

		〈신 설〉	증권거래비용 내역, 증권거래비용에 포함되는 항목 등 기재 금융비용 내역 기재
--	--	-------	---

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

1. 재무정보	제 12 기 재무제표 갱신에 따른 변경	-	2023. 5. 1. 기준
1. 재무정보 □ 요약재무정보	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 회계감사 미대상에 따른 결산자료 추가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	〈신 설〉 〈신 설〉 〈신 설〉	증권대여 또는 증권차입에 따른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 내역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기재 〈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〉 〈주식의 매매회전율〉
2.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	제 12 기 재무제표 갱신에 따른 변경	-	2023. 5. 1. 기준
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실적	제 12 기 재무제표 갱신에 따른 변경	-	2023. 5. 1. 기준

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
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. 회사개요	최근 기준으로 기재	2022. 4. 30. 기준	2023. 4. 30. 기준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.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 내용	최근 기준으로 기재	제 23 기(2020.12.31) 제 24 기(2021.12. 31)	제 24 기(2021.12.31) 제 25 기(2022. 12. 31)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. 운용자산 규모	최근 기준으로 기재	2022. 4. 30. 기준	2023. 4. 30. 기준
3.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(신탁업자)	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(1) 주요업무 (생 략) -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 재산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	(1) 주요업무 (현행과 같음) -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 재산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

		업무, 투자신탁재산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 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의 확인업무	업무, 투자신탁재산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 산정의 적정성 여부, <u>투자신탁재산 명세서와 신탁업자가 보관·관리 중인 집합투자재산의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</u> 등의 확인업무
--	--	--	--

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

1.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. 수익자총회 등	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	(3)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<u>제 5 영업일</u>	(3)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<u>5 영업일</u>
2.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나. 임의해지	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	(1) 집합투자업자는 아래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. ① ~ ② (생략) ③ 투자신탁(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. 이하 같다)으로서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④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	(1) 집합투자업자는 아래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. ① ~ ② (현행과 같음) ③ 투자신탁(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. 이하 같다)으로서 설정한 후 1년(<u>법 시행령 제 81 조제 3 항제 1 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 년</u>)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④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(<u>법 시행령 제 81 조제 3 항제 1 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 년</u>)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

		(2) ~ (3) (생 략)	(2) ~ (3) (현행과 같음)
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. 수시공시	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(2) 수시공시 ①(생 략) ②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	(2) 수시공시 ①(현행과 같음) ②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(<u>법 제 230 조에 따른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</u>)
	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	③ ~ ⑦ (생 략) ⑧ 투자신탁(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. 이하 같다)으로서 설정 이후 1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 192 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⑨ 투자신탁이 설정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 192 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⑩ (생 략)	③ ~ ⑦ (현행과 같음) ⑧ 투자신탁(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. 이하 같다)으로서 설정 이후 1 년(<u>법 시행령 제 81 조제 3 항제 1 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 년</u>)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 192 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⑨ 투자신탁이 설정되고 1 년(<u>법 시행령 제 81 조제 3 항제 1 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 년</u>)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 192 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⑩ (현행과 같음)